

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(등급)표
(제53조제1항 관련)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
		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
한국사능력 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 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비고

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(逆算)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,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(등급)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소명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